

의안번호	2220714
의 퇴 인	박균택의원
회 답 일	2026.10.12.
추 계 번호	26D4236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국가핵심산업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고, 해외 경쟁기업을 이롭게 하는 불공정한 범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소추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제2항)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범죄 신고자 및 증인에 대한 철저한 신변 보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함(제3항) 국가는 해외 경쟁기업의 부당한 침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 및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2	안 제6조(경제간첩죄)	외국정부등의 이익을 위하여 제2조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이 경우 10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제1항) 외국정부등의 이익을 위하여 제2조제4호마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이 경우 8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제2항)	의무규정
3	안 제7조(경제이적죄)	외국법인등의 이익을 위하여 제2조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이 경우 8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제1항) 외국법인등의 이익을 위하여 제2조제4호마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이 경우 6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제2항)	의무규정
4	안 제8조(일반 경제이적죄)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국가핵심산업정보가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2조제4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이 경우 6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	의무규정
5	안 제1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함.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제6조의 위반행위: 200억 원 이하의 벌금 2. 제7조의 위반행위: 100억 원 이하의 벌금 3. 제8조의 위반행위: 80억 원 이하의 벌금	
6	안 제12조(몰수·추징)	이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함	의무규정
7	안 제18조(방첩활동 및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방첩활동을 하거나 그 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8	안 제20조(포상금)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죄의 신고 또는 그 검거에 기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국가의 책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6조(경제간첩죄)	
3	안 제7조(경제이적죄)	

4	안 제8조(일반 경제이적죄)	
5	안 제11조(양벌규정)	
6	안 제12조(몰수·추징)	
7	안 제18조(방첩활동 및 조사 등)	
8	안 제20조(포상금)	

2. 상세 사유

- 제정안은 기술유출 행위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사범’으로 규정하고, ‘경제간첩죄’, ‘경제이적죄’ 및 ‘일반 경제이적죄’ 체계를 마련하여 범죄의 배후·목적과 실제 유출 여부에 따른 위험성 및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의 시책 수립·시행(안 제3조), 방첩활동 및 조사(안 제18조), 포상금(안 제20조) 지급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경제간첩죄(안 제6조), 경제이적죄(안 제7조), 일반 경제이적죄(안 제8조), 양벌규정(안 제11조), 몰수·추징(안 제12조)에 따른 벌금 수입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시책 수립 내용을 알기 어렵고 추가적인 수사 비용이나 포상금 지급 규모, 벌금 수입 규모 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 송치건수 기준 기술유출 범죄 단속 건수는 다음과 같음

[표 1] 기술유출 범죄 단속 건수(검찰 송치건수 기준): 2021~2025년

(단위: 건)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국내	80	92	127	96	146
해외	9	12	22	27	33
합계	89	104	149	123	179

자료: 경찰청 보도자료(26.1.20.)

- 따라서 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박은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은비	02-6788-4831	ebpark@assembly.go.kr